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1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소병훈·안태준·윤건영

이기헌 · 김교흥 · 서영석

오세희 • 정성호 • 박 정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,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.

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,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.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(안 제4조의4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2항제2호 중 "계약 기간"을 "계약 기간(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, 기획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습 기간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조의4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	제4조의4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			
약) ① (생 략)	약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	2			
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				
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서명				
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				
로 주고받아야 한다.		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<u>계약 기간</u> ·갱신·변경 및	2. 계약 기간(문화예술용역 제			
해지에 관한 사항	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			
	기간, 기획 기간 등 대통령령			
	으로 정하는 연습 기간을 포			
	함한다)		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	